

전주지방법원 2020. 8. 19 선고 2020가단845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0. 7. 15.

판 결 선 고 2020. 8. 19.

주 문

1. 피고는 D에게 별지 [목록] 기재 제1, 2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7. 3. 21. 접수 제28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가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[목록]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1. 1. 2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1. 1. 27. 접수 제5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[청구원인]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권태관

별지